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25-96
변 호	관련

제안년월일 : 2025. 8. 29.

제 안 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제5조의2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전체 위원 정수 증원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 조정 가능성이 존재하고, 민간전문가 증원은 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나 필수 사항은 아니므로 존치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제5조의2제2항 중 “6명”을 “8명”으로 하는 것을, “6명”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2명”을 “4명”으로 하는 것을, “2명”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6명”을 “8명”으로 하는 것을, “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2명”을 “4명”으로 하는 것을, “2명”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 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 기한) <u>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제2조의2(기금의 존속 기한) (개정안과 같음)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 <u>마포구</u> ”라 한다) 관할지역에서 <u>마포구가</u>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 4. (생략)	제3조(기금의 조성) -- ----- -----. 1. ----- -- “ <u>구</u> ”----- ----- <u>구가</u> ----- -----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조성) 1. (개정안과 같음) 2. ~ 4. (개정안과 같음)
제5조(기금의 관리·운영) 구청장은 기금을 <u>마포구</u>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영	제5조(기금의 관리·운영) ----- <u>구</u> ----- ----- ----- ----- -----.	제5조(기금의 관리·운영) (개정안과 같음)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6명</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략) 2. 기금운용 또는 청소·재활용 관련 민간전문가 <u>2명</u>	제5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8명</u>-----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현행과 같음) 2. ----- ----- - <u>4명</u>	제5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u>6</u> <u>명</u>-----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 ----- - <u>2명</u>
---	--	---